

제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자 : 2023.12.12

수신 : 중앙운영위원회

제목 : 중앙운영위원회 요청서에 대한 답변

1)재검표

1-1 재검표는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제10조(의무)에 의거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제36조(기타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에 의거 공정하지 못한 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표과정의 공정성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무효표 기준
- ② 1차 개표 이후 한 번 더 바뀐 무효표 기준
- ③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없는 무효표 기준

제30조 5항 '이 외의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는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라는 조항에 의해 결정 난 상황이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 판단해 이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중선관위의 편향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편향된 의견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기 매우 어렵다

중선관위 위원 모두 공정성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런 논란이 생길 조항 자체가 공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조항을 그대로 따랐을 때 '투표 차가 유의미해 2번 측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중선관위의 편향된 판단으로 무효표 규정을 조작해 재투표의 빌미를 제공했다' 라는 의혹을 피하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중선관위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규정 자체의 허점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한 반박 없이는 1번 측에도 제21조 1항의 내용과 제22조 1항의 내용에 의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2-1 투표함의 신뢰성

투표함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시행할 때 조작여부를 판단할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 ① 무효표 점검: 무효표 개수, 개표 과정에서 나온 기록과 비교
- ② 점검된 무효표에 대한민국 중선관위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의 무효표 결과
- ③ ②에서 도출된 무효표를 최종 공고된 내용인 521표(빈체로), 549표(동화)에 더했을 때 나온 선거 결과
= 빈체로 533표, 동화 567표
- ④ ③번에서 나온 결과와 전체 투표 용지 검표 결과의 일치 정도
= 빈체로 533표, 동화 567표(③) : 빈체로 533표, 동화 566표 (전체 투표 용지 검표 결과)

위와 같이 재검표 과정에서 기존 투표내용과 유사성이 얼마나 높은지, 재검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작 가능성이 없는 투표함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존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소실된 표가 1개 존재했습니다. 이는 앞에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단순 소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선관위는 이에 타당성과 개연성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3-1 무효표 기준의 변경

앞선 1) 내용에 따라 선거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중선관위는 판단했고,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하거나 빼는 과정이 아닌 이미 검증되어있는 기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표 규정을 따르는 것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 해임

해당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와 결과를 판단한 뒤 공지하겠습니다.